

# 검 토 보 고 서

양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

양 주 시 의 회  
전문위원 김 형 열

##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

### □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

양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 
드리겠습니다

### □ 본조례 제정 이유는

우리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분야 전문가  
.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활용하기 위함  
입니다

### □ 주요 내용은

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

### □ 본조례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

먼저 조문별로 살펴보면

○ 안 제2조에는 홍보대사로 위촉 대상자를 열거  
하였는데 대상자 선정에 있어 우리시를 아끼는 마음  
을 가진 사람을 선정하기 위하여 본조 제1항 각호  
의 대상자로서 우리시에 연고를 가지고 있거나 우리시

관내에 거주자를 우선대상으로 하면 더욱 의욕적인  
홍보 효과를 거양할수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

- 또한 우리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이미지의 유명인도 필요하지만, 우리시의 각홍보 분야별로 분류하여 이에 맞는 각각의 이미지를 갖춘사람을 선정하여 홍보대사로 활용하면 내실 있는 효과를 거양 할수 있을 것 입니다
- 본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과는 관련없는 우리시 시책추진의 자체조례로서,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우리의 고유사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대내·외적으로 촉진제 역할을 할수 있을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

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